

# 제조물책임 및 사고사례에 관한 연구

윤 훈용, 이 상도, 이 동춘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 ABSTRACT

전 세계가 하나의 Global 시대로 전환되면서 국적에 관계없이 기업의 생존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상황에서 앞으로 21C는 외국기업 및 제품들이 자유경쟁적으로 우리 시장에 선 보이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질이 나쁜 수입품으로부터 국내제품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외국으로 수출된 국내제품이 그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들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나 정부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시행 현황 및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시행안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둘째, 국내외 제조물 책임 사고사례를 수집하여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미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 정착화 되어있는 선진 여러나라의 경우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내용은 그 나라의 국가경제, 사회적여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조금씩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으며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또한 각국의 상황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인식 전환 및 대책이 필요한것으로 조사되었다.

## 1. 서 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목표는 전 세계의 시장이 서로 경쟁을 촉진시키고 또한 시장 자유화를 통하여 새로운 경제질서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OECD에 가입한 현 시점에서 가입에 따른 여러 경제제도의 변화에 큰 부작용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회원국들의 수준에 부합되는 각종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동아일보). 또한 앞으로는 외국의 기업이나 제품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며 우리기업의 제품 또한 외국의 시장에서 다른나라의 제품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구매의식, 안전의식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최대한의 만족 즉, 제품의 만족 뿐만 아니라 A/S, 제품안전, 피해보상 활동 등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자 의식 향상, 시장개방 등으로 소비자의 제품안전, 건강, 편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질이 나쁜 국내제품 혹은 수입품으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않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정부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안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국가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 (Product Liability; PL)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안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며 국회 통과 절차를 통해 앞으로 곧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및 이미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현황,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시행안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국내의 제조물책임 사고사례를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의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2.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이나, 사용법에 대한 지시, 경고 미비 등으로 말미암아 사용자 또는 제 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판매업자 등 그 제품의 제조 판매에 관여한 자가 부담해야 할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특별한 책임요건을 마련한 법제도이다. 제품의 결함성과 제조자의 과실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하기위해 제품의 결함을 다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

- (1) 제조상의 결함 : 제조자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본래의 설계 사양과 다르게 제작된 불량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통시켰거나 혹은 발견 하고서도 그대로 유통시킨 경우에 발생하는 결함을 말한다.
- (2) 설계상의 결함 : 제품의 설계 과정에서 생긴 결함으로 잘못된 설계에 따라 제품이 제조될 경우 발생하는 결함을 말한다.
- (3) 지시상의 결함 : 제품에 대한 적절한 지시나 경고를 하지 않아 제품의 설치 및 사용할 때 사고를 유발하는 결함을 말한다.
- (4) 개발상의 결함 : 유통 시점에는 특별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제품이 그 이후 학문, 기술 발전에 의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결함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개발위험의 항변 (state-of-art defence)'이 인정되어 제조자에게는 귀책성이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최근에는 '제조물관찰의무' 이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물관찰의무'란 제조자의 거래상 주의(注意)가 제품에 대한 설계, 제조, 지시로만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학문, 기술 수준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품을 관찰하여 소비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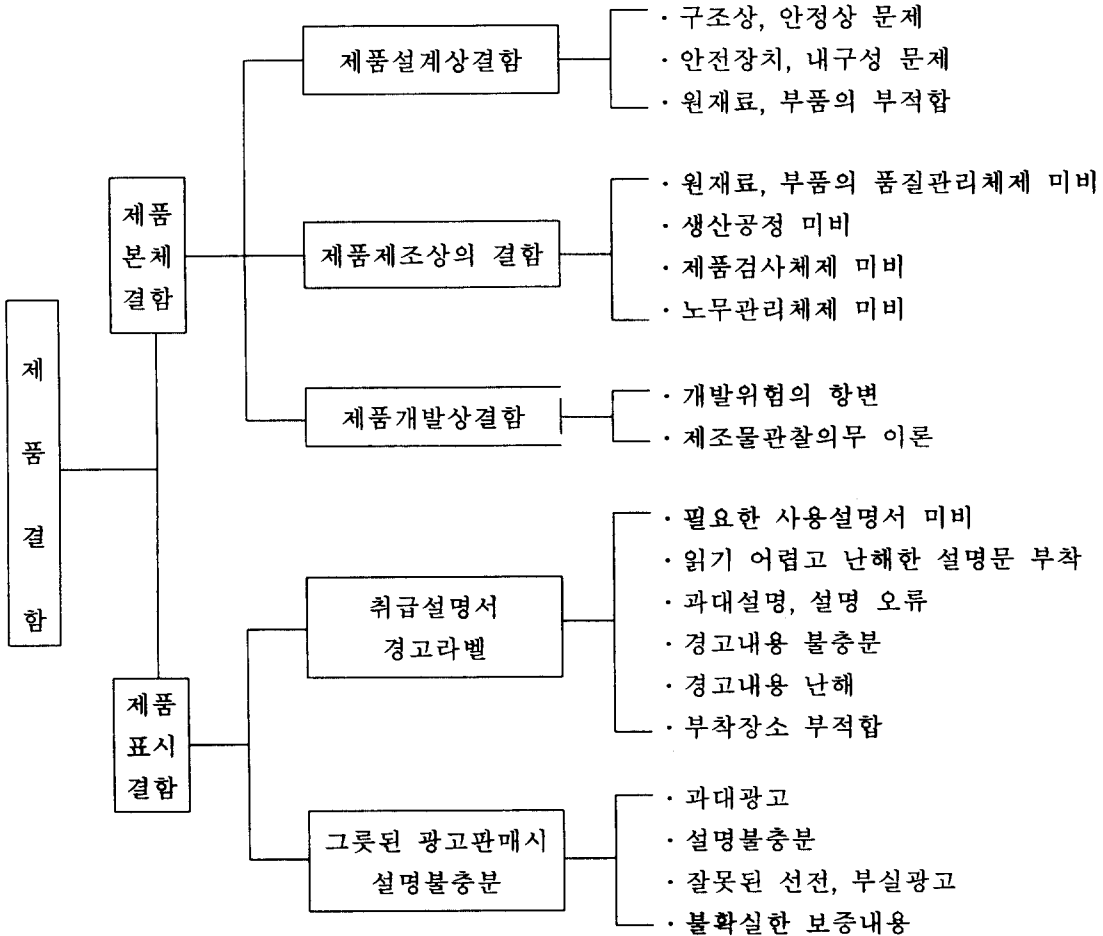
## 3.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현황 비교 분석

### (1) 미국

미국은 제조물책임법의 시발국가로서 PL법리가 판례에 의해 형성, 발전되었다. 1965년 시작된 PL법의 법적근거, 즉 소송원인 (cause of action)으로서는 '과실입증', '보증책임', 그리고 '엄격책임'의 세 가지가 경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과실입증'이란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 제조업자는 결함과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보증책임'은 소비자가 제조물을 본래의 제조자가 보증한 용도로 사용중에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제조업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며, '엄격책임'은 소비자가 제품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없이 해당제품의 결함만을 입증하면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이다. 이 '엄격책임'은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크게 줄인 소비자 중심의 원칙으로서 현재 PL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 PL법의 시행이후 소송의 급격한 증가와 배상액의 고액화로 인하여 1970년대 중반의 '제조물책임위기 (product liability crisis)'와 1980년대 중반의 '보험위기 (insurance crisis)'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위기들은 미국의 독특한 소송제도 및 보험회사의 영업정책등이 결합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제조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punitive damage award), 과도한 소송 배상금으로 인한 제조업자의 도산 (배상액의 비상한선), 과도한 변호사수 및 변호사의 성공보수제도 (contingent fee

[그림 1]



arrangement)등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따라서 이런 PL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1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민사재판제도 개혁 제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징벌배상금의 상한을 설정하고, 패소자 측의 소송비용 전액 부담원칙을 제한하며, 조정 중재 등의 재판 외적인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등으로 되어있다.

(2) 유럽

유럽 공동체 (European Community: EC)에서는 시장통합 작업의 일환으로 1968년 PL에 관한 통일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여 1985년 7월 PL에 관한 EC지침이 채택되었다. 유럽 각국의 PL법 입법내용을 분석해 보면 몇가지 쟁점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발위험항변'의 인정 여부와 '피해보상액의 최고 한도액' 설정 여부가 주요사항이라 할 수 있다. '개발위험항변'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핀란드나 룩셈부르크와 같은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고 한도액'의 설정

여부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한선이 없으나 독일,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지에서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다. 유럽 각국의 PL법 내용은 그 나라의 국가경제, 사회적 여건, 외국기업 혹은 제품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 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미국과는 달리 소송의 증가, 기술발전의 정체, 보험업계의 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업의 안전증시, 제품리콜의 증가,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제공 강화, 화재에 의한 해결의 증가 등과같은 긍정적인 영향이 더 부각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시장이 이미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고 기업이 법 제정에 앞서 많은 준비를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일본 및 기타국가

일본의 경우 1975년 정부기관인 '국민생활심의회'에서 PL제도를 포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심의를 시작한 이후 다른 선진국가들보다 조금 늦은 1994년 7월 국회에서 공표되어 1년후인 1995년 7월 부터 시행되었다. 일본의 경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으며 최고한도액의 상한선은 두지않고 있다. 1997년 현재, PL법이 시행된 이후 상담사건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특별히 소송이 증가하거나 보험료 인상,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현상 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유럽과 유사하게 상담이나 화해, 알선 조정 등의 재판 외적인 해결제도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즉 각 사업자 단체별로 PL센터나 상담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경우 사업자단체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소비자의 신뢰성을 얻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는 기타 국가들로서는 아시아에서는 중국, 필리핀 등이 있으며 남미의 브라질, 유럽의 러시아, 헝가리, 그밖에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있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PL사고 피해보상을 사회보장적인 제도로써 구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적(人的)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청구하지 않아도 사실에 기초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

(4)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1980년초 부터 국회에서 PL법에 관심을 가져왔으나 진전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PL제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동향과 OECD가입, 소비자 피해와 기업현실의 인식에 따른 필요성이 대두되어 PL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6년 '소비자보호원'에서 시안을 발표했고 공청회도 가진상태이며 정부시안이 확정되어 국회를 통과하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PL법 시안은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추세를 따르고 있으며 '결함의 존재 및 원인관계 추정' 조항에서는 제조물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써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그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하여 소비자에게 결함입증의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 '개발위험 항변'을 인정하였다.

#### 4. 제조물책임 사고사례

(1) 설계상의 결함 (vs. Sheboygan Falls Mutual, IPSO International, Mac-Gary, 1995, Wisconsin, 미)

11살의 소년이 IPSO #45 Big Mac triple-load 세탁기가 돌고있던 중 세탁기의 문을 열고 세탁물을 세탁기 안으로 밀어 넣으려다가 멈추지 않고 도는 세탁기 안으로 팔이 쏠려 들어가서 팔이 절단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소년은 15시간에 걸친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수술결과 단지 5%의 정상적인 팔의 기능을 되찾았다. 피해자측은 세탁기 제조회사(IPSO)가 정상적인 사용의 압력하에서도 구부러지는 부적당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안전장치가 쓸모없이 되어 버렸고,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을 때 문을 열수 없게 해주는 수동 잠김장치와 문이 열렸을 때 세탁기를 멈추게 하는 안전장치가 불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탁기가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 잠김장치를 포함하지 않았고 IPSO측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측에서는 소송을 대비해 세탁기가 작동 중에 문이

열리는 장면의 비디오 테이프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으로 가기전에 8.8백만달러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5백만달러는 IPSO로부터, 나머지 3.3백만달러는 Mac-Gray사로부터 지불되었으며 Sheboygan Falls Mutual과는 계속 소송중이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판매상, 보험회사까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조물책임법의 책임범위는 제품을 만든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제조상의 결함 (vs. Bunn-O-Matic Corp., Minnesota, 1995, 미)

학교의 건물이 교사 휴게소에 있던 커피메이커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새벽 3시에 불이 난 사건이 있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학교 건물 소실로 524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학교측은 이 화재가 커피메이커 회사인 Bunn-O-Matic GR 모델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고 원인인 커피메이커는 항상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커피를 데우는 종류였는데 접촉불량으로 인하여 열이 가열되어서 불이 건물로 옮겨 붙었다는 것이었다. 학교측은 불의 발화지점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주정부 소방관과 제품의 제조상 결함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공학적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내세웠으며, 커피메이커 회사측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을 내세워 불이 교사 휴게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해당 제품은 화재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커피메이커 회사측에서는 학교측에 얼마간의 합의금 (2만5천불)을 제시했으나 학교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들어가서 배심원 판결에 의해 학교측에 6.3백만달러가 배상되었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학교측과 커피메이커 회사측에서 여러 전문가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학교측의 증인들이 더욱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증거를 제시했으며 이로인해 화재의 발생지점과 제품의 제조상의 결함이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3) 지시상의 결함 (vs. Sony, 1994, 中)

Sony사가 1993년 10월 북경 전시회에 배포하였던 AV제품의 중국판 종합 카탈로그 (홍콩 현지 법인에서 유럽용 카탈로그를 번역한 것)에는 29인치형 TV가 문자방송 및 위성방송수신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는 위성방송수신이 되지 않았다. 1994년 이 카탈로그를 보고 1만5천원(元)에 상품을 구입했던 소비자 2명으로 부터 실제 기재된 기능과 다르다는 클레임이 들어와 Sony에서는 결함을 인정하고 교환을 제시했으나 소비자측은 1인당 25만원(元)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제품자체에 설계, 제조상의 결함이 없더라도 취급설명서, 카탈로그가 제품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제품본체의 결함과 대등하게 중대한 결함으로 취급되고 있다.

## 5.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주로 처리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에서는 피해구제의 기준을 상품의 결함으로 보고 있다. 아직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이 없이 시정 권고에 그치고는 있지만 제품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면 제조업자에게 배상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느정도의 PL정신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미치게 될 영향이라 한다면 첫째, 제조업자는 제품에 대해 '엄격책임원칙주의'를 지켜야 한다. 즉, 제조업자 혹은 판매업자는 자신들이 취한 행위와 관계없이 제품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책임을 져야한다. 둘째, 국가나 시민 소비자 보호단체 등의 홍보 증가로 인하여 제품에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제품의 자체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 클레임을 물론 계약조건, 판매방법, 품질, 사용방법, 에프터서비스 등 기업의 제품마케팅 전반에 대

한 클레임 등이 어느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업의 제품 생산비가 상승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임금, 금리, 공장부지 등 여러면에서 고비용 구조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 PL소송 처리비용의 증가, 보험료 상승등으로 인해 제품생산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풍토 및 소송절차, 법률서비스 시장상황 등을 볼 때 미국과 같은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까지는 비용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미국과 같이 징벌적 배상에 대한 조항이 없으므로 손해 배상액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 위험제품 혹은 저질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는 제조물책임법이 제조업자 뿐만 아니라 판매업자에게도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수입된 위험제품, 저질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수입업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노력을 증대시킬것으로 기대된다.

## 6. 결론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정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의 제품 안전, 애프터서비스, 편리성 등에 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더욱이 OECD에 가입한 현 상황에서는 우리와 경쟁하는 여러나라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으로서가 아닌 선진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제조물책임법은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필리핀과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미 독자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PL법은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상대 교역국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것이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PL법 시행이후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났지만 또한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며,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각국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자국의 여건에 맞는 PL법을 시행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정책을 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시행안이 만들어 지고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제조물책임에 대한 소비자 및 각 기업들의 인식은 아직도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정책에 관한 사전 대응책이 미비할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리콜, PL소송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을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품의 설계나 제조과정에서의 결함과 같은 제품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물론이고 취급설명서나 경고, 라벨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도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PL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제품 사고발생 이전의 예방대책이라 할 수 있는 PLP (Product Liability Prevention)활동을 통한 설계상에서의 안전에 대한 고려 및 제조부문에서의 품질관리, 취급설명서나 경고라벨, 광고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 또한 리콜제도 등을 능동적으로 도입하여 정직한 기업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주도록 노력하는 한편 더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 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동아일보, "OECD의 규제라운드 검토배경과 한국영향", 9월2일자, 1996
2. 삼성소비자문화원, "자동차의 PL 및 Recall사고 사례", 1995
3. 신광식,구본천,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96
4. 오창수, "PL법 기업이 모르면 망하고 소비자가 모르면 손해본다", 청림출판, 1995

5. 진효근 譯, “제조물책임대책”, 야스다종합연구소
6. 한국공업표준협회, “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한 제조물책임”, 1994
7. 한국법제연구원, “제조물책임의 법제화”, 국내입법의견조사, 94(3), 1994
8.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 상담 연보 및 피해구제 사례집”, 1995
9. 한국소비자보호원, “94년 소비자위해정보와 안전실태 조사”, 1995
10. 한국소비자보호원, “95년 소비자위해정보와 안전실태 조사”, 1996
11.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효과와 입법방향 - 공청회결과보고서”, 1996
12. 최병록, “제조물책임법 도입과 법적,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소비자보호원, 1996
13. 통상산업부,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및 소송사례”, 한국무역협회, 1990
14. 우유현, “제조물배상 책임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5. 한봉희, 김진우, “제조물관찰의무”, 소비자문제연구, 18, 40-72, 1996
16. 林田 學, 가전업체에게 배우는 PL 실무대책, 동경대학교, 1994
17. Christopher Hodges, “Looking at EC Product Liability Law”, Product Liability International, Sept, 131-133, 1993
18. Deidra Morrison, “Product Liability - Introduction”. <http://www.henetbc.org:80/information/>, 1996
19. Howard Abbott, “The Human Factor”, Product Liability International, Apr, 50-61, 1992
20. Jocelyn Kellam, “Trend in produ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International, Mar, 40-42, 1995
21.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s, <http://www.newsstand.lotus.com/PSL>, 1997